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23-60

제출년월일 : 2023. 5.

제 출 자: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학령기 이후 배움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운영경비 지원,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(안 제5조~제7조)
- 마. 자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(안 제8조~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「장애인복지법」제20조(교육)

- 2)「평생교육법」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
- 3)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12조의3(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23. 4. 13. ~ 5. 3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 - 5) 제7회 서울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수정 의결(2023, 5, 16.)

워아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 지법 | 제20조 및 「평생교육법 | 제 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

수정안

지법」제20조 및「평생교육법」제 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 구에 **살고 있는** 장애인의 일상생 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 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 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20조 및「평생교육법」제20조 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,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, 여가·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장애인"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- 2. "장애인 평생교육"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교육활동을 말한다.
- 3. "장애인평생교육시설"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「평생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4조(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있다.
 - 1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
- 2.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
- 3.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- 4.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
- 5.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
- 6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
- 7.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
- 8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장애인, 장애인 가족,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6조(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)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.
 - 1. 시설・설비의 개수・보수에 필요한 경비
- 2.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
- 3.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· 간식비
- 4. 교재·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
- 5.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제7조(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
 - 2.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
 - 3.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
 - 4.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8조(자문)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설치·운영 중 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5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가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(1)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6조(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운영경비 지원)
- (2)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(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비용추계기간 : 2023. 1. ~ 2027. 12. (60개월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1 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 이후 계속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시비 보조금	453,000	450,000	450,000	450,000	450,000	2,253,000
	구비 보조금	100,000	103,300	106,709	110,230	113,868	534,107
	소계(b)	553,000	553,300	556,709	560,230	563,868	2,787,107
ㅁ 총 비용(a-b)		553,000	553,300	556,709	560,230	563,868	2,787,107

- 비용: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경비 및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사업비

4. 재원조달 방안

가. 매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비 보조금 지원, 구비 10% 이상 매칭

5. 덧붙이는 의견

가.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임현경 (☎ 3153-1683)